

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소관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 의회사무처

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8월 17일, 정경민 의원 외 22명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
(2023년 8월 29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면, 토론, 의결)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정경민 의원

나. 제안이유

○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청소년이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도록 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운영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청소년의회교실 대상 선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수료증 수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관계기관 협조를 위한 사항(안 제6조)
- 청소년의회교실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병기)

-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도록 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함

□ 종합 검토의견

- 조례안의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
 - 안 제2조, 청소년 의회교실의 대상 연령은 경상북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9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으로 하고 있고 학교의 범위에는 초·중·등 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를 포함하는 등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청소년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

※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실적

- 2017년 : 6회 469명 / 2018년 : 8개교 596명 / 2019년 : 23개교 1,438명
- 2020년 ~ 2022년 6월까지 코로나로 미 실시

- 안 제3조,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의 목표와 추진 방향, 운영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운영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등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
 - 안 제4조, 의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하되 경상북도교육감과 협의하거나 도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기관 간 협력과 협치를 통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라고 판단되며, 안 제4조 5항, 청소년의 회교실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간식, 기념품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법령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할 것임
 - 안 제5조, 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제공하는 것은 참가자의 참여 동기 부여와 함께 지방의 회의 역할을 경험한 참가자의 자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
- 본 조례 제정은 경상북도의회가 그동안 근거 없이 추진해

오던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, 조례 제정으로 사업의 계속성과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6. 토론 요지 :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